

용두초 실내환경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중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비고
28,919,000	28,919,000	26,290,000	2,629,000	0	0	전기공사 100%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및 내역서 열람은 시설담당에서 전자 견적 마감일까지 열람 가능 (043-640-6643)

3.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목) 10:00 ~ 2026. 9. 8(화) 10:00

4. 견적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8(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견적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9. 9.(수)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6. 9. 9.(수) 11:00

※ 견적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의 경우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신규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는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5.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북도 제천시**),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기공사업 배상책임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 (cbjche00@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 추진** 작성 대상입니다. (11번~14번 증빙자료 제출)

6.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천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적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업무처리 불가)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전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전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전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전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적서는 연기된 전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전적설명서

전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전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다항에 해당되는 전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전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전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다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2. 낙찰자결정

-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본 공사의 A값: 1,582,823원**)
-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 계
438,687	579,628	57,643	0	506,865	1,582,823

- 나.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후정산 등

-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제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견적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

무추진계획' 을 작성하여 **증빙자료 포함하여 담당자 메일(cbjche00@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 가. 우리교육지원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정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 바.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 공고 및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견적) 이용,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문의 : 행정과 재무팀(☎043)640-6631)
 - 공사 문의 : 행정과 시설사업팀(☎043)640-6643)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불린\)신고센터](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불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제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페인트
- 연락처: 010-○○○○○-○○○○
- 상시근로자수: 10 명
- 소재지: 충북 청주시 ○○○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 (서명)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를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 1. 15.~2025. 1. 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치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교육청 작성)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치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사업담당자: _____ (서명)

계약담당자: _____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증빙자료 제출)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				
○ 기관명 : _____ 점검일자 : 20__년 ____월 ____일				
1.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 계획에 따른 이행 (실시시기, 지표 등에 따라 평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2.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업무 충실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 등 업무 시) - 도급 등 업무의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도급사업 업무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관리감독자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 작업장 정리정돈 등				
○안전관리자(위탁 시 안전관리 전문기관)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권의, 적격률 선정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분석, 재발방지 보좌 지도조언 등				
○보건관리자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권의, 적격률 선정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분석, 재발방지 보좌 지도조언 등				
○산업안전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전환 등 -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 건강상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등				

12. 근로자 신규, 정기, 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 정기, 특별(해당사)교육 실시 확인

안전·보건교육 일지					결 재	관 리 감 독 자
교육일시					직급/작성자	
교육과정	☒ 정기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1시간, 8시간)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마. 기 타 () 교육					
교육 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강사(관리감독자) 및 장소	소속	직책	강사	교육 실시 장소		
교육 제목						
교육 내용	고 용 내 용 고 용 사 진					
교육 방법	집체교육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NO	부서명	성 명	서 명	NO	부서명	성 명
1				6		
2				7		
3				8		
4				9		
5				10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위험성 평가표(예시)

담당	부장	대표

공정명		위험성평가				평가자 (리더 및 팀원)				
평가일시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현재상 태 및 조치	현재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추정)	개선 예정일	담당자	비 고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 성					

위험성 평가표 【작업 사례】

공정명 평가일시		위험성평가					평가자 (리더 및 팀원)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위험성 평가		현재위험성 등급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담당자	비 고	
	원인	유해위험 요인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용접작업	기계적 요인	용접작업 후 작업자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용접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용접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안전보건규칙 제 13조 (안전보건 관리규정)	이동	3	2(중등)	작업 종료 후 작업자 휴식 시간 부여	2013-02-28	이동
조립작업	기계적 요인	작업 중 부하가 과중하여 작업자가 피로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교육 실시 확인서				
수료번호 : 안전협회2018-620-A502-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대 표 자 :				
2. 교육의 개요				
교육의 종류	교육일자	교육시간 (인원시간)	교육내용	교육이수자(명)
관리감독자교육	2018.08.23 - 2018.08.24	16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제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1조에 따라 교육이수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장				